

심사보고서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832
----------	-----

2025. 12. 3.
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 11. 12. / 이진환 의원 등 8명
- 나. 회부일자 : 2025. 11. 12.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12. 3.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부서 신설 및 조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상임위원회 소관부서를 확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변경사항(안 제3조)
 - 신설: 행정국, 도서관사업소, 남양주시정연구원, 남양주문화재단
 - 조정: 보좌기관 민원담당관 삭제, 청년담당관 재편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서용관)

-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신설 및 조정된 기관들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부서로 추가하여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심사보고서

【남양주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833
----------	-----

2025. 12. 3.
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 11. 12. / 이진환 의원 등 8명
- 나. 회부일자 : 2025. 11. 12.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12. 3.

2. 제안설명 요지

- 사무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의회사무국 내 하부조직 확대와 사무분장을 규정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의정활동 지원 등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의회사무국 내 하부조직 변경사항 반영(안 제3조) 및 사무기구 사무분장 명시(별표)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서용관)

- 지방의회의 기능 확대, 청사·방송설비·전산시스템의 전문적 관리 필요성에 따라 이를 전담하는 운영지원팀을 신설하고 분장 사무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